

문 의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제도과	과 장 김지수 사무관 윤기웅	042-481-5397
	2015년 5월 18일(월) 조건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5월 17일(일)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 5월 18일부터 개선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시행 -

전자부품 개발기업 A사는 새로 개발한 회로소자를 특허출원하면서 심사를 청구했으나, 약 6개월 후 기술 특성상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하기로 했다. A사는 특허출원이 아직 심사되지 않아 이를 취하하면 이전에 납부한 심사청구료를 당연히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A사는 현행 제도에에서는 이를 돌려받을 수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이다. 서비스도 받지 않았는데 돈만 지불한 것이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를 개선한 특허법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특허법에 따라,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청구한 후 실제 심사서비스를 받기 전에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심사청구료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출원인이 거절이유를 통지받지 않았다면 심사청구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특허청이 지정한 전문기관으로부터 선행기술 조사결과가

특허청에 통지된 경우에는 심사청구료를 돌려받지 못한다. 선행 기술 조사결과와 통지여부는 전자출원사이트(특허로)나 특허고객 상담센터(1544-8080)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김지수 특허심사제도과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수수료 부과 취지에 맞게 심사청구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특허행정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붙임 : 전자출원사이트(특허로) 홈페이지 화면

[붙임] 전자출원사이트(특허로) 홈페이지 화면

특허로 바로가기
로그인
인증서등록
facebook
twitter
HOME
My특허로
이용안내

특허로
| 통합검색
검색

사용자 등록/변경
출원신청
특허관리
증명서발급
수수료관리
고객센터
전체메뉴보기

특허로 이용안내
온라인출원 방법안내

3 특허로에 처음 방문하셨나요?
특허로는 전자출원만을 위한 편리한 온라인 출원 지원 시스템입니다.
[특허로 둘러보기](#)
[상세보기](#)

2 특허로 전자출원을 위한 사전절차안내
1. 출원인코드 부여신청
2. 인증서 등록
3. 인증서 로그인

출원신청

- 국내출원
- PCT국제출원
- 국제상표출원
- 국제디자인출원

GO

특허관리

증명서발급

수수료관리

고객센터

관리한서비스 >
웹서비스 >
상담서비스 >

관련서비스

- 특허정보검색
- 분류코드검색
- 법령자료
- 민원서식 다운로드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파일첨부 및 제출요류 조치방법
도로명주소 서비스
도로명주소 이의신청
Easy상표출원 시스템

전자출원서비스 이용시간
월~토요일 00:00~24:00
일/공휴일 09:00~21:00
상담센터 1544-8080
1:1 원격상담

공지사항
특허청뉴스
고시/공고

- [공지] 변리사 등록 정보 현행화 안내
- [공지] 2015.11.08(일) 특허로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 [공지] 특허로(서식작성기) 복수건 제출 서비스 한시적 제한 안내
- [공지] 특허로 알람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Popup Zone
1/2
전체보기

변리사 등록 정보 현행화 안내